

외국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의 세금과 세리사제도

도 코 세 리 사 회

목 차

머 리 말	1
1. 세무행정의 구조	2~4
(1) 국세 기구	
(2) 지방세 기구	
(3) 조세 법률주의	
(4) 신고납세제도	
(5) 세무 조사와 구제 제도	
2. 일본의 세리사 제도	5~6
(1) 세리사의 업무	
(2) 세무·회계 전문가 「세리사」	
(3) 세리사회	
3. 일본의 주요 세금	6
4. 소득에 대한 세금	7~13
(1) 개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2)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3) 원천소득세	
5.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	13~14
(1) 증여세	
(2) 상속세	
6. 재산에 대한 세금	14~15
(1) 자동차종량세·자동차세·경자동차세	
(2) 고정자산세·도시계획세	
(3) 사업소세	
7. 소비에 대한 세금	15
(1) 소비세	
(2) 담배세·도부현담배세·시읍면담배세	
(3) 주세	
(4) 골프장이용세	
8. 거래에 대한 세금	15~16
(1) 인지세	
(2) 등록면허세	
(3) 부동산취득세	
(4) 자동차취득세	

머 리 말

일본의 세제 및 세무 행정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행정기능에 부족함이 있어도 사후적 구제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주류였습니다. 1942 년에 세무대리사 법이 제정되어 납세자의 세무를 대리하는 공적자격제도가 처음 만들어 졌으나 세무행정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2 차 대전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당시까지의 부과과세제도를 대신하여 1947 년에는 소득을 당사자가 계산하여 신고, 납세하는 신고납세제도가 만들어 졌습니다.

1949 년에는 미국의 샤우프 세제시찰단이 일본의 세제를 조사하여 근대적인 세제로 개편할 것을 권고한 「샤우프 권고」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그때까지의 간접세 중심의 세제를 직접세 중심의 조세 체계로 개편함과 동시에 신고납세제도의 강화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여 1951 년에는 현재의 세리사법이 제정되었고, 세리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납세제도를 지원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세제도 이 「샤우프 권고」를 바탕으로 하여 소득세, 법인세등의 직접세와 이를 보완하는 간접세를 중심으로 한 조세 체계로 되어있습니다. 그 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지금의 세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팸플릿은 외국인을 위하여 일본 세제를 알기 쉽게 해설해 놓은 것입니다.

아울러 납세자의 대리인으로서 일본의 세무행정을 지원하는 민간 세무전문가인 세리사와 그 제도에 대해서 알기 쉽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세제는 국가간의 조세 조약의 적용에 따라 달라지며 법인세도 이전(移轉)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 피난처 세제와도 관련되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리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쿄 세 리 사 회

1. 세무행정의 구조

일본의 세무행정은 과세권의 소재에 따라 크게 국세와 지방세의 행정기구로 구분됩니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각각 각종 세목을 취급하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 기구

국세 행정기구는 재무성의 외청인 국세청을 중심으로, 그 산하에 있는 전국 11(삿포로·센다이·칸토신에츠·도쿄·나고야·오사카·히로시마·타카마츠·후쿠오카·구마모토)개의 국세국과 오키나와국세사무소 및 524 개의 세무서에서 세무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등 내국세의 신고·납세에 관한 창구 업무는 납세자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담당합니다.

(2) 지방세 기구

지방세에 관한 세무를 통괄하는 곳은 총무성의 자치세무국이며, 도부현(道府県)세, 시정촌(市町村)세 등 지방세의 기획 입안, 과세권의 귀속에 대한 결정 등을 합니다. 다만, 실질적인 신고 또는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는 과세권을 가지는 각 지방공공단체가 시행합니다. 도부현세는 각 도부현세사무소, 시정촌세는 시청, 구청, 정촌(町村)사무소의 세무과가 창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조세 법률주의

일본국 헌법은, 제 30 조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 및 제 84 조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거나 현행 조세를 변경할 경우에는 법률 또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를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조세 법률주의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조세란 공공서비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의 부의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므로 그 부과·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여 행하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4) 신고납세제도

①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

조세의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은 「신고납세방식」 및 「부과과세방식」 이외에 납세 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납세방식」은 납부할 세액이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되는 방식이며 신고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주민세, 사업세 및 소비세 등 대부분의 주요한 조세는 이 방식을 따릅니다.

「부과과세방식」이란 납부할 세액이 세무행정청의 처분에 따라 확정되는 것으로 국세의 부가세, 지방세의 고정 자산세 및 자동차세등이 이 방식을 따릅니다.

이외에 원천소득세나 인지세 등은 납세 의무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부해야 할 세액이 확정됩니다.

이처럼 일본의 조세는 신고납세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스스로 계산해 납부하는 제도이며, 국민주권 원칙을 정한 일본국 헌법의 이념을 세제의 측면에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납세 신고 및 경정의 청구

납세 신고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가. 기한 내 신고

신고 납세 방식의 조세 납세자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신고서를 기한내신고서라고 합니다.

나. 기한 후 신고

기한내신고서를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자는 제출기한 후에도 세무서장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수정신고

납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경정 결정을 받은 자는, 그 신고 등에 의한 세액이 과소할 경우에는 해당 신고 등에 대해 세무서장에 의한 경정이 있을 때까지는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경정청구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해당 신고와 관련된 세액이 과대했을 경우에는 해당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하여 세무서장에게 그 세액의 경정을 요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12월 2일보다 전에 법정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경정청구의 기한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 됩니다.)

③ 청색신고제도

청색신고제도는 일정한 장부 서류를 비치한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 청색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각종 특전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신고납세제도의 보급 및 장부 기장의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④ 전자신고

국세의 신고·납세·신청·제출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고 (e-Tax)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세무 조사와 구제 제도

① 세무 조사 및 경정·결정

신고납세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자의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나

해당 신고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사에 근거하여 세액을 확정시키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한 조사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에 의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또한, 납세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조사 결과, 그 세액이 과소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에 의해서 경정이 시행됩니다.

경정 또는 결정에 따라 세액이 추징될 경우에는 벌칙으로 소정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② 불복 신청 제도 및 소송

세무서장에 의한 경정 또는 결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 불복 심판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일본의 세리사제도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및 특정 급여소득자 등은 당사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세제가 복잡하므로 세리사 또는 세리사 법인에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세리사의 업무

세리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가로서 독립적이며 공정한 입장에서 신고납세제도의 이념과 납세 의무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조세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납세의무의 적절한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사명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① 세무사 업무

- 가. 세무대리 (세무관공서에 대한 신고 등 또는 세무관공서의 조사나 처분에 대한 주장 혹은 진술에 관해 대리·대행하는 것)
- 나. 세무 서류 (각종 신고서, 신청서, 불복 제기서 등) 의 작성
- 다. 세무 상담

② 관련 업무

세무사 업무에 따르는 재무서류의 작성, 회계장부의 기장대행 그 외 재무에 관한 사무

③ 세무 소송에 따르는 보조 업무

세무 소송에 대하여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원조하기 위해 보좌인으로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함께 재판소에 출두하고 진술(출정진술)하는 업무

④ 주식회사의 회계참여 업무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회계참여로서 회사의 이사와 공동으로 계산서류의 작성등을 실시하는 업무

⑤ 사회공헌

세무사의 지식과 경험을 살린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 「세무사 기념날」이나 「세를 생각하는주간」 등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실시
- 재판소의 민사·가사의 조정 제도, 성년 후견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가
- 조세 교육을 실시

⑥ 지방공공단체의 외부감사

외부감사인으로서 행정의 적절한 운영에 참가

(2) 세무·회계 전문가 「세리사」

세리사는 세리사법에 근거하여 자격이 부여된 민간 세무 전문가입니다. 세리사의 자격은 세리사 시험에 합격한 자 및 그것과 동등한 지식을 가진다고 인정되는자에게 부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약 7만 7천명의 세리사가 등록되어 있어 납세자의 의뢰에 따라 세무 서류의 작성·세무조사에 대한 입회·세무 상담·회계 장부의 기장 대행 등의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세리사가 아닌 자가 세리사 업무를 행하는 것은 법률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3) 세리사회

세리사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리사회에 입회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사회는 전국에 15 개가 있고 이를 연합한 조직이 일본세리사회연합회입니다. 도쿄에는 도쿄세리사회가 있고 하부조직으로서 각 지부조직이 있으며, 그 지역은 각세무서와 같은 관할이 되고 있습니다.

세리사회는 지부 및 회원에 대한 지도, 연락과 감독에 관한 사무를 보고 있고 수시로 회원에 대한 연수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3. 일본의 주요 세금

	국세	지방세	
		도부현(道府県)세	시정촌(市町村)세
소득에 대한 세금	소득세 법인세	도부현민세 사업세	시정촌민세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	증여세 상속세		
재산에 대한 세금	자동차중량세	자동차세	고정자산세 특별토지보유세 도시계획세 경자동차세 사업소세
소비에 대한 세금	소비세 담배세 주세	지방소비세 도부현 담배세 골프장 이용세	시정촌 담배세
거래에 대한 세금	인지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세 자동차 취득세	

4. 소득에 대한 세금

(1) 개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일본에서 개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와 「주민세」 및 개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세되는 「사업세」가 있습니다.

① 소득세

가. 소득이란 그 해의 수입 금액에서 그 수입을 얻기 위해 사용된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은 이자, 배당, 부동산, 사업, 급여, 퇴직, 산림, 양도, 일시소득, 잡소득 등의 10 종류로 분류됩니다.

소득이 있는 개인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과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단, 급여 지불자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와 연말조정 제도가 있습니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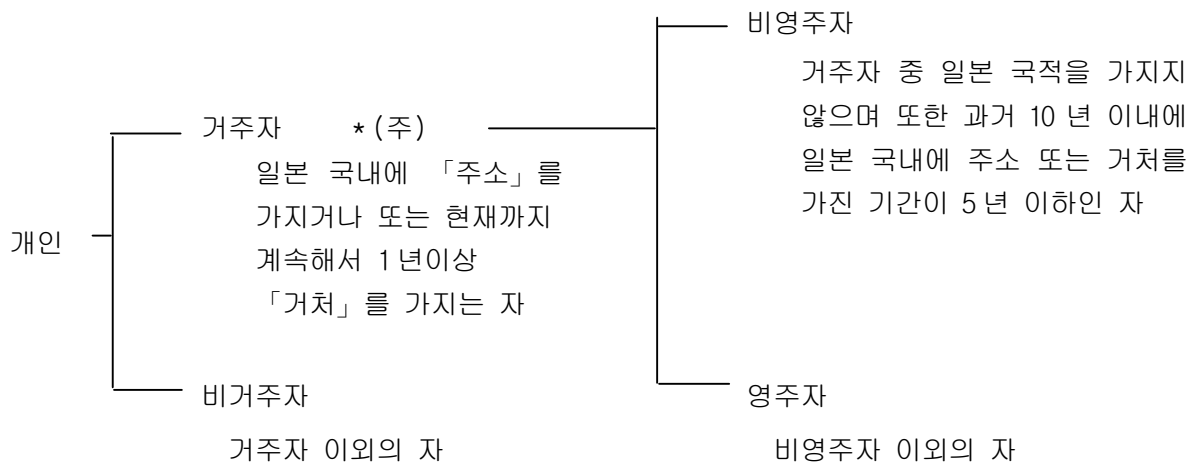
- 급여와 상여의 연간 수입 합계액이 2,000 만 엔을 넘는 자
- 급여소득과 퇴직소득 이외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20 만 엔을 넘는 자
- 두 군데 이상의 사업소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신고기한: 다음 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

(납세 관리인을 지명하지 않고 해의 중도에 출국하는 경우는 출국일)

나. 납세자의 종류

개인은 각각의 거주형태에 따라 과세됩니다. 거주형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주) 급여소득자로서 일본 국내에 거주하게 된 자는 사전에 체류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 즉시 거주자로 추정합니다.

다. 과세소득의 범위

구분		과세소득의 범위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지불	국외지불	국내지불	국외지불
거주자	비영주자	전액과세	전액과세	전액과세	국외에서 지불되는 소득 중에서 국내에 송금되었다고 판단되는 금액만 과세(따라서 국외에서 지불되는 소득 중 국외에 보유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영주자	전액과세	전액과세	전액과세	전액과세
비거주자		원칙적으로 과세		비과세	

라. 소득세의 세율

과세 소득의 구분		세율
천엔 초과	천엔 이하	%
—	1,950	5
1,950	3,300	10
3,300	6,950	20
6,950	9,000	23
9,000	18,000	33
18,000	40,000	40
40,000		45

다만, 2013년 1월 1일부터 2037년 12월 31일 사이에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부흥특별소득세가 소득 세액의 2.1% 부과됩니다.

② 주민세

도부현민세와 시정촌민세를 총칭한 것으로 주민세라고 합니다. 1월 1일 현재, 주소를 가지는 자에게는 소득할(所得割)주민세와 균등할(均等割)주민세, 주소가 없어도 사무소나 가옥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균등할주민세가 과세됩니다. 주민세의 납부세액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고 소득세할의 세율은 일률적으로 10%, 균등할은 연간 정액 4,000 엔입니다.

다만, 2014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부흥특별세로서 균등할 1,000 엔이 부과됩니다.

(2) 법인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일본에서 법인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에는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주민세」 및 「법인사업세」가 있습니다.

① 법인세

가. 법인세란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별되며 내국법인이란 일본 국내에 본점 등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외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이외의 법인입니다. 외국 기업에 의해 일본 국내에 설립된 자회사, 관련 회사 등은 내국법인이지만, 외국 기업의 지점이나 공장 그 외 항구적 시설은 외국법인이 됩니다.

나. 납세 의무자의 종류

내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을 불문하고 납세의무가 있으나 외국법인은 「특정의 국내원천소득」이 있을 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다. 과세소득의 범위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특정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라. 사업연도

사업연도란 손익의 계산 단위가 되는 기간으로,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마. 세율

23.4%의 세율을 적용하나 자본금 등이 1 억엔 이하인 법인의 경우, 연소득 800 만엔이하의 금액에는 19%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바. 확정신고

각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 납세지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그 본점 등의 소재지가 됩니다. 외국법인의 납세지는 사업과 관련된 사무소, 사업소 그 외 이에 준하는 시설 (이른바 항구적 시설)의 소재지가 됩니다.

아. 이전(移轉)가격세제

법인이 행하는 국외 관련자와의 거래에서 지급되는 대가의 액수가 독립 기업간 가격에 미치지 않을 경우 또는 지급하는 대가의 액수가 독립 기업간 가격을 넘을 경우에는 해당 국외 관련 거래는 독립 기업간 가격으로 진행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 연결 납세 제도

모회사와 자회사 등의 기업 그룹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는 2003년 3월 3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로부터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국내의 모법인과 그 모법인의 완전 지배 관계가 있는 모든 자법인(100% 자회사 및 손자회사 등)이며, 과세 소득을 통산해서 신고 납세하여야 합니다.

차. 조직 재편 세제

법인이 합병, 회사 분할, 현물출자, 주식 교환, 주식이전의 조직 재편을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이전(移轉) 자산 등은 세무상의 장부가격으로 계승된 것으로 보고 양도 손익을 미룰 수 있는 특례조치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카. 그룹 법인세제

100% 자본 관계에 있는 기업 그룹을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며 2010년 10월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에 의해 그룹 내에서의 토지나 유가 증권등의 자산의 이동은 그룹 외에 이전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파. 과소자본세제

외국의 모회사등에 대해 이자 부담이 있는 부채의 평균 잔액이 일본 자회사에 대한 자본 지분의 3 배를 넘을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에 해외의 모회사에 지급하는 부채의 이자 가운데 그 초과액에 대응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② 법인주민세

법인주민세는 국내에 사무소, 사업소등을 가지는 법인등에 부과되는 도부현민세 또는 시읍면민세이며 인세할(法人税割), 균등할(均等割)이 있습니다.

③ 법인사업세

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도부현세이며 소득등을 기준으로 한 소득할(所得割)외 기업의 종업원수, 자본금액등 외형적인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한 부가가치할(付加価値割), 자본할(資本割)이 있습니다.

(3) 원천소득세

개인 또는 법인에 일정한 지불을 할 때에는, 지불자는 해당 지불액에서 원천소득세 및 부흥 특별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범위와 세율은 거주자(내국법인을 포함)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자에 대한 원천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이자, 배당, 급여, 퇴직수당, 보수 요금이 있습니다.

【외국 법인에 대한 과세 관계 개요】

외국법인의 구분		항구적시설을 가지는 법인		항구적시설을 안가지는 법인	원천징수	
		항구적시설 귀속소득	그 외의 국내 원천소득			
소득의 종류						
국내원천소득	(사업소득)	항구적시설에 귀속하는 소득 【법인세】	【과세대상외】		무	
	②국내에 있는 자산의 운용·보유 [아래(7)~(14)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무	
	③ 국내에 있는 재산의 양도 (오른쪽에 있는 것에 한정한다)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양도			무 (주1)
			국내에 있는 부동산 위에 있는 권리의 양도			
			국내에 있는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			
			사모은 내국 법인 주식의 양도			
			사업 양도 유사 주식의 양도			무
			부동산 관련 법인 주식의 양도			
	국내 골프장의 소유·경영과 관련되는 법인의 주식의 양도 등					
	④인적 역무의 제공 사업의 대가				20.42%	
	⑤국내 부동산의 임대료등				20.42%	
	⑥그 외의 국내 원천 소득				무	
	(7) 채권 이자등				15.315%	
	(8) 배당등				20.42%	
	(9) 대출금리자				20.42%	
(10) 사용료등			20.42%			
(11) 사업의 광고 선전을 위한 상금			20.42%			
(12) 생명보험 계약에 근거하는 연금등			20.42%			
(13) 정기적금의 급부 보충금등			15.315%			
(14) 의명 조직 계약등에 근거하는 이익의 분배금			20.42%			
국내원천소득 이외의 소득		【과세대상외】		무		
				【법인세】		
				【원천징수만】		

(주) 1 토지의 양도 대가에 대해서는 10.21%의 원천징수가 된다.

2 (7)부터(14)의 국내 원천 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는것이며 법인세법에는 이러한 국내 원천 소득의 구분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다.

2017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은 68개국·지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으며 각국과의 조세조약 적용에 따라 세율이 경감 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적용을 받으려면 지급받는 자가 지급하는 자를 통해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증여 및 상속에 대한 세금

(1) 증여세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납세지의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의 신고기간은 다음 해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재산의 증여를 받았을 때에 일정한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한후,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에 그 증여 재산과 상속재산을 합계해서 상속세를 정산하는 「상속시 정산과세」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의 세율】

우기 이외의 증여		20세 이상으로 직계 존속 (부모·조부모)으로부터의 증여	
과세 가액	세율(%)	과세 가액	세율(%)
2,000천엔 이하	10	2,000천엔 이하	10
3,000천엔 이하	15	4,000천엔 이하	15
4,000천엔 이하	20		
6,000천엔 이하	30	6,000천엔 이하	20
10,000천엔 이하	40	10,000천엔 이하	30
15,000천엔 이하	45	15,000천엔 이하	40
30,000천엔 이하	50	30,000천엔 이하	45
30,000천엔 초과	55	45,000천엔 이하	50
		45,000천엔 초과	55

과세 가액은 기초공제(1,100천엔)나 배우자 공제(20,000천엔)를 공제한 후의 금액입니다.

(2) 상속세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했을 때나 유언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했을 때는 납세지의 세무서에 상속세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망인을 피상속인, 상속에 의해 재산을 계승한 자를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주소가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에 따라 과세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신고 및 납세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의 사실을 안 날의 다음날로부터 10 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의 세율】

과세 가액	세율(%)
10,000 천엔 이하	10
30,000 천엔 이하	15
50,000 천엔 이하	20
100,000 천엔 이하	30
200,000 천엔 이하	40
300,000 천엔 이하	45
600,000 천엔 이하	50
600,000 천엔 초과	55

과세 가액으로부터 공제하는 기초공제액은
30,000 천엔 + 6,000 천엔 × 법정 상속인의 수가 됩니다.

6. 재산에 대한 세금

(1) 자동차 종량세 · 자동차세 · 경자동차세

① 자동차 종량세

차량검사등의 때에 자동차의 종량에 따라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② 자동차세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놓아두는 주차장의 소재지 도부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③ 경자동차세

원동기 부착 자전거, 경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및 이륜 소형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을 주로 놓아두는 주차장의 소재지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 고정자산세 · 도시계획세

① 고정자산세

토지나 가옥 및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 비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법인·개인)가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표준 세율인 1.4%를 기준으로서 각시읍면이 조례에 의해 정합니다.

②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토지 및

가옥의 소유자(법인·개인)가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토지 및 가옥 평가액의 0.3%(제한세율)입니다.

(3) 사업소세

정령 지정 도시등의 대도시에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하는 자(법인·개인)가 해당 사업소의 바닥면적,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7. 소비에 대한 세금

(1) 소비세

소비세는 일본 국내에서의 상품 판매나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의 거래에 과세되며 이러한 거래를 사업으로 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비세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므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수입품은 과세대상이나 수출품은 면세입니다.

과세 사업자가 되는 개인 및 법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거래에서 받은 소비세와 지불한 소비세의 차액을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소비세의 세율은 8%의 단일 세율입니다. (소비세 6.3, 지방 소비세 1.7%를 포함합니다)

(2) 담배세·담배특별세·지방담배세

담배의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3) 주세

알코올분 1%이상의 주류에 대해서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4) 골프장 이용세

골프장의 이용에 대해서 도도부현가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8. 거래에 대한 세금

(1) 인지세

계약서·영수증 등의 일정한 과세 문서에 과세 하는 국세입니다.

(2) 등록면허세

① 부동산등기

토지 건물의 소유권 등을 등기한 자(법인·개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② 상업등기

회사 설립, 증자, 지점 등기, 임원변경등기, 상호변경등기 등의 상업등기 시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특허권·저작권 등의 등록이나 자격 등록을 할

때에도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부동산 취득세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자(법인·개인)가 도부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4)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를 취득한 자(법인·개인)가 도부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외국인을 위한 알기 쉬운 일본의 세금과 세리사제도
< 2017 년도판 >

2017 년 11 월 발행

편집 · 발행
도쿄세리사회 · 국제부

〒151-0051 도쿄도 시부야구 센다가야 5-10-6
TEL 03-3356-4461 (대표) / FAX03-3356-4469